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1. 1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 618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2020. 2. 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타법률이나 해외 규제동향을 고려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사용상 제한사항 마련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기능성화장품 심사사례 및 해외 규정을 고려하여 염모제 성분을 추가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위해평가를 통해 안전역이 확보되거나 비의도적으로 함유될 수 있는 등의 경우 예외 조건을 신설하여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추가 및 사용제한 기준 강화(안 별표 1, 별표 2)

- 잔류성오염물질, 과불화화합물 일부 성분 및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

- 보존제 성분 중 벤잘코늄클로라이드의 분사형 제품에 사용금지

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예외 조건 신설(안 별표 1)

- 대마에서 제외되는 부위에 비의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대마의 관리 기준 마련
- 천연으로 존재 할 수 있는 생활주변 방사성물질에 대한 허용 한도 설정
-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중 Fluorescent Brightener 367의 허용 기준 마련

다. 염모제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추가 및 농도상한 설정 (안 별표 2)

- 그 간 기능성화장품 심사사례 등을 근거로 염모제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10종을 추가하고 사용할 때의 농도상한을 정함

라. 원료명칭 명확화 및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 정비 (안 별표 2 및 별표 3)

- ‘p-메칠아미노페놀’의 사용할 때 농도상한은 ‘황산염으로서 0.68%’로 ‘황산염’에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원료와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함
-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19.3.14. 시행)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용어 변경된 사항을 반영 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seodh@korea.kr
- 전화: 043-719-3410, 팩스: 043-719-34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 호

「화장품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2020. 2.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네오스티그민 및 그 염류(예 : 네오스티그민브로마이드)”와 “노닐페놀 [1] ; 4-노닐페놀, 가지형 [2] ” 사이에 “노나데카플루오로데카노익애씨드”를 신설한다.

[별표 1]의 “니켈 카보네이트”와 “니코틴 및 그 염류” 사이에 “니켈(II)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를 신설한다.

[별표 1]의 “ α,α -디클로로톨루엔”과 “디클로로펜” 사이에 “(+/-)-2-(2,4-디클로로페닐)-3-(1H-1,2,3-트리아졸-1-일)프로필-1,1,2,2-테트라플루오로에틸에터(테트라코나졸-ISO)”를 신설한다.

[별표 1]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다만, 같은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른 대마씨유 및 대마씨추출물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및 칸나비디올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로 하고, “방사성물질”을 “방사성물질(다만, 제품에 포함된 방사능의 농도 등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외)”로 한다.

[별표 1]의 “셀렌 및 그 화합물(셀레늄아스파테이트는 제외)”와 “소듐헥사시클로네이트” 사이에 “소듐노나데카플루오로데카노에이트”를 신설하고, “소듐헥사시클로네이트”와 “Solanum nigrum L. 및 그 생약제제” 사이에 “소듐헵타데카플루오로노나에이트”를 신설한다.

[별표 1]의 “2급 알킬아민 및 그 염류”와 “2-{4-(2-암모니오프로필아미노)-6-[4-하이드록시-3-(5-메틸-2-메톡시-4-설파모일페닐아조)-2-설포네이토나프트-7-일아미노]-1,3,5-트리아진-2-일아미노}-2-아미노프로필포메이트” 사이에 “암모늄노나데카플루오로데카노에이트”, “암모늄퍼플루오로노나노에이트”를 신설한다.

[별표 1]의 “자일리딘, 그 이성체, 염류, 할로젠화 유도체 및 설펜화 유도체”와 “족사졸아민” 사이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하고 있는 잔류성오염물질(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는 해당 법

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신설한다.

[별표 1]의 “트리플루페리돌”과 “1,3,5-트리하이드록시벤젠(플로로글루시놀) 및 그 염류” 사이에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신설한다.

[별표 1]의 “파르에톡시카인 및 그 염류”와 “2급 아민함량이 5%를 초과하는 패티에씨드디알킬아마이드류 및 디알칸올아마이드류” 사이에 “퍼플루오로노나노익에씨드”를 신설한다.

[별표 1] 중 “형광증백제”를 “형광증백제(다만, Fluorescent Brightener 367은 손발톱용 제품류 중 베이스코트, 언더코트, 네일폴리시, 네일에나멜, 탑코트에 0.12% 이하일 경우는 제외)”로 한다.

[별표 2] 중 “* 보존제 성분” 및 “* 염모제 성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2. 일반사항 마. 중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고, 9. 기록보존 중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1,2,4-트

리하이드록시벤젠 및 별표 2 중 벤잘코늄클로라이드와 인디고페라 엽가루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따른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변경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수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만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다.

1. 별표 1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2. 별표 2의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및 인디고페라 엽가루

제5조(안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품목은 이 고시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보존제 성분

원 료 명	사 용 한 도	비 고
글루타랄(펜탄-1,5-디알)	0.1%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3-아세틸-6-메틸피란-2,4(3H)-디온) 및 그 염류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로서 0.6%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4,4-디메틸-1,3-옥사졸리딘(디메틸옥사졸리딘)	0.05% (다만, 제품의 pH는 6을 넘어야 함)	
디브로모헥사미딘 및 그 염류 (이세치오네이트 포함)	디브로모헥사미딘으로서 0.1%	
디아졸리디닐우레아 (N-(히드록시메틸)-N-(디히드록시메틸-1,3-디옥소-2,5-이미다졸리디닐-4)-N'-(히드록시메틸)우레아)	0.5%	
디엠디엠하이단토인 (1,3-비스(히드록시메틸)-5,5-디메틸이미다졸리딘-2,4-디온)	0.6%	
2, 4-디클로로벤질알코올	0.15%	
3, 4-디클로로벤질알코올	0.15%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단,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과 병행 사용 금지)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염화마그네슘과 질산마그네슘 포함)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3:1)혼합물로서)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메텐아민(헥사메칠렌테트라아민)	0.15%	
무기설펜이트 및 하이드로젠설펜이트류	유리 SO ₂ 로 0.2%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및 사카리네이트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벤잘코늄클로라이드로서 0.1% · 기타 제품에 벤잘코늄클로라이드로서 0.05%	분사형 제품에 <u>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사용금지</u>
벤제토늄클로라이드	0.1%	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원 료 명	사 용 한 도	비 고
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테르류	산으로서 0.5% (다만, 벤조익애씨드 및 그 소듐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산으로서 2.5%)	
벤질알코올	1.0% (다만,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	
벤질헤미포름알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5%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보레이트류(소듐보레이트, 테트라보레이트)	밀납, 백납의 유화의 목적으로 사용 시 0.76% (이 경우, 밀납·백납 배합량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기타 목적에는 사용금지
5-브로모-5-나이트로-1,3-디옥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다만, 아민류나 아미이드류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브로모-2-나이트로프로판-1,3-디올(브로노폴)	0.1%	아민류나 아미이드류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브로모클로로펜(6,6-디브로모-4,4-디클로로-2,2'-메칠렌-디페놀)	0.1%	
비페닐-2-올(<i>o</i> -페닐페놀) 및 그 염류	페놀로서 0.15%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살리실릭애씨드로서 0.5%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다만, 샴푸는 제외)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0.08%	
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허용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소듐아이오데이트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소듐하이드록시메칠아미노아세테이트(소듐하이드록시메칠글리시네이트)	0.5%	
소르빅애씨드(헥사-2,4-디에노익애씨드) 및 그 염류	소르빅애씨드로서 0.6%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아이피비씨)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2%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 · 다만, 데오드란트에 배합할 경우에는 0.0075%	· 입술에 사용되는 제품,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 바디로션 및 바디크림에는 사용금지 ·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원 료 명	사 용 한 도	비 고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목욕용 제품, 샤워젤류 및 샴푸류는 제외)
알킬이소퀴놀리늄브로마이드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5%	
알킬(C ₁₂ -C ₂₂)트리메틸암모늄 브로마이드 및 클로라이드(브롬화세트리모늄 포함)	두발용 제품류를 제외한 화장품에 0.1%	
에칠라우로일알지네이트 하이드로클로라이드	0.4%	입술에 사용되는 제품 및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엠디엠하이단토인	0.2%	
알킬디아미노에칠글라이신하이드로클로라이드용액(30%)	0.3%	
운데실레닉애씨드 및 그 염류 및 모노에탄올아마이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산으로서 0.2%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3,3'-비스(1-하이드록시메틸-2,5-디옥소이미다졸리딘-4-일)-1,1'메틸렌디우레아)	0.6%	
이소프로필메칠페놀(이소프로필크레졸, <i>o</i> -시멘-5-올)	0.1%	
징크피리치온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5%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퀴터늄-15 (메텐아민 3-클로로알릴클로라이드)	0.2%	
클로로부탄올	0.5%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삭제>	<삭제>	
클로로자이레놀	0.5%	
<i>p</i> -클로로- <i>m</i> -크레졸	0.04%	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클로로펜(2-벤질-4-클로로페놀)	0.05%	
클로페네신(3-(<i>p</i> -클로로페녹시)-프로판-1,2-디올)	0.3%	
클로헥시딘, 그 디글루코네이트, 디아세테이트 및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제품에 클로헥시딘으로서 0.1%, • 기타 제품에 클로헥시딘으로서 0.05% 	
클림비졸[1-(4-클로로페녹시)-1-(1H-이미다졸릴)-3, 3-디메틸-2-부탄논]	두발용 제품에 0.5%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원 료 명	사 용 한 도	비 고
테트라브로모- <i>o</i> -크레졸	0.3%	
트리클로산	사용 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테오도런트(스프레이 제품 제외), 페이스파우더, 피부 결점을 감추기 위해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예 : 블레 미쉬컨실러)에 0.3%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트리클로카반(트리클로카바닐리드)	0.2% (다만, 원료 중 3,3',4,4'-테트라 클로로아조벤젠 1ppm 미만, 3,3',4,4'-테트라클로로아족시벤젠 1ppm 미만 함유하여야 함)	
페녹시에탄올	1.0%	
페녹시이소프로판올(1-페녹시프로판-2-올)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1.0%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삭제>	<삭제>	
포믹애씨드 및 소듐포메이트	포믹애씨드로서 0.5%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 에이치씨엘	0.05%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 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프로피오닉애씨드 및 그 염류	프로피오닉애씨드로서 0.9%	
피록톤올아민(1-하이드록시-4-메칠-6(2,4,4-트리메칠펜틸)2-피리돈 및 그 모노에탄올아민염)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1.0%, 기타 제품에 0.5%	
피리딘-2-올 1-옥사이드	0.5%	
<i>p</i> -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테르류 (다만, 에스테르류 중 페닐은 제외)	· 단일성분일 경우 0.4%(산으로서) · 혼합사용의 경우 0.8%(산으로서)	
헥세티딘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헥사미딘(1,6-디(4-아미디노페녹시)- <i>n</i> -헥산) 및 그 염류(이세치오네이트 및 <i>p</i> -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	헥사미딘으로서 0.1%	

* 염류의 예 :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암모늄, 에탄올아민,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설페이트, 아세테이트, 베타인 등

* 에스테르류 : 메칠, 에칠, 프로필, 이소프로필, 부틸, 이소부틸, 페닐

* 염모제 성분

원 료 명	사용할 때 농도상한(%)	비고
p-니트로-o-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1.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3.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메칠-5-히드록시에칠아미노페놀	산화염모제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아미노-4-니트로페놀	산화염모제에 2.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아미노-5-니트로페놀	산화염모제에 1.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아미노-3-히드록시피리딘	산화염모제에 1.0%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4-아미노-m-크레솔	산화염모제에 1.5%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5-아미노-o-크레솔	산화염모제에 1.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5-아미노-6-클로로-o-크레솔	·산화염모제에 1.0% ·비산화염모제에 0.5%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m-아미노페놀	산화염모제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o-아미노페놀	산화염모제에 3.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p-아미노페놀	산화염모제에 0.9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염산 2,4-디아미노페놀옥시에탄올	산화염모제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염산 톨루엔-2,5-디아민	산화염모제에 3.2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염산 m-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염산 p-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3.3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염산 히드록시프로필비스(N-히드록시 에칠-p-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0.4%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톨루엔-2,5-디아민	산화염모제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m-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1.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p-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N-페닐-p-페닐렌디아민 및 그 염류	산화염모제에 N-페닐-p-페닐렌 디아민으로서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피크라민산	산화염모제에 0.6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p-니트로-o-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p-메칠아미노페놀	산화염모제에 0.68%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5-아미노-o-크레솔	산화염모제에 4.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m-아미노페놀	산화염모제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o-아미노페놀	산화염모제에 3.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p-아미노페놀	산화염모제에 1.3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톨루엔-2,5-디아민	산화염모제에 3.6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m-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3.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p-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3.8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N,N-비스(2-히드록시에칠)-p-페 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2.9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6-디아미노피리딘	산화염모제에 0.1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원 료 명	사용할 때 농도상한(%)	비고
염산 2,4-디아미노페놀	산화염모제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1,5-디히드록시나프탈렌	산화염모제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피크라민산 나트륨	산화염모제에 0.6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산화염모제에 1.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1.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1-히드록시에칠-4,5-디아미노피 라졸	산화염모제에 3.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히드록시벤조모르포르린	산화염모제에 1.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6-히드록시인돌	산화염모제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1-나프톨(α-나프톨)	산화염모제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레조시놀	산화염모제에 2.0 %	
2-메틸레조시놀	산화염모제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몰식자산	산화염모제에 4.0 %	
카테콜(피로카테콜)	산화염모제에 1.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피로갈롤	염모제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염기성등색31호(Basic Orange 31)	산화염모제에 0.5 %	그 외 사용기준은 「화장 품의 색소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다
염기성적색51호(Basic Red 51)	산화염모제에 0.5 %	그 외 사용기준은 「화장 품의 색소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다
염기성황색87호(Basic Yellow 87)	산화염모제에 1.0 %	그 외 사용기준은 「화장 품의 색소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다
과붕산나트륨 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 과산화수소수 과탄산나트륨	염모제(탈염·탈색 포함)에서 과 산화수소로서 12.0 %	
과황산나트륨 과황산암모늄 과황산칼륨	=	염모제(탈염·탈색 포함)에 서 산화보조제로서 사용
인디고페라 (Indigofera tinctoria) 엽 가루	비산화염모제에 25%	기타제품에 사용금지
황산철수화물(FeSO ₄ ·7H ₂ O)	비산화염모제에 6%	산화염모제에 사용금지
황산은	비산화염모제에 0.4%	산화 염모제에 사용금지
헤마테인	비산화염모제에 0.1%	산화 염모제에 사용금지

※ 염모제 성분 중 염이 다른 동일 성분은 1개 품목에 1종만 배합하여야 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p> <p><신 설></p> <p><u>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u></p> <p>방사성 물질 <단서 신설></p> <p><신 설></p>	<p>[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p> <p><u>노나데카플루오로데카노익애씨드</u></p> <p><u>니켈(Ⅱ)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u></p> <p><u>(+/-)-2-(2,4-디클로로페닐)-3-(1H-1,2,3-트리아졸-1-일)프로필-1,1,2,2-테트라플루오로에틸에터(테트라코나졸-ISO)</u></p> <p><u>「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다만, 같은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른 대마씨유 및 대마씨추출물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및 칸나비디올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u></p> <p><u>방사성 물질(다만, 제품에 포함된 방사능의 농도 등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외)</u></p> <p><u>소듐노나데카플루오로데카노에이트</u></p> <p><u>소듐헵타데카플루오로노나노에이트</u></p> <p><u>암모늄노나데카플루오로데카노에이트</u></p> <p><u>암모늄퍼플루오로노나노에이트</u></p> <p><u>「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하고 있는 잔류성 오염물질(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u></p>

형광증백제 <단서 신설>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보존제 성분

원 료 명	사용한도(%)	비고
(생략)	(생략)	(생략)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및 사카리네이트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벤잘코늄클로라이드로서 0.1% 기타 제품에 벤잘코늄클로라이드로서 0.05%	<신설>
(생략)	(생략)	(생략)

* 염모제 성분

원 료 명	사용할 때 농도상한(%)	비고
(생략)	(생략)	(생략)
p-메칠아미노페놀 및 그 염류	산화염모제에 황산염으로서 0.68%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바에 따른다.)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퍼플루오로노나노익애씨드

형광증백제(다만, Fluorescent Brightener 367은 손발톱용 제품류 중 베이스코트, 언더코트, 네일폴리시, 네일에나멜, 탑코트에 0.12% 이하일 경우 제외)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보존제 성분

원 료 명	사용한도(%)	비고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분사형 제품에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사용금지
(생략)	(생략)	(생략)

* 염모제 성분

원 료 명	사용할 때 농도상한(%)	비고
(생략)	(생략)	(생략)
황산 p-메칠아미노페놀	산화염모제에 0.68%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원료명	사용할 때 농도상한(%)	비고
(생략)	(생략)	(생략)
피로갈롤	염모제에 2.0%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과붕산나트륨 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 과산화수소수 과탄산나트륨	염모제(탈염·탈색 포함)에서 과산화수소로서 12.0 %	
<신설>	<신설>	<신설>

원료명	사용할 때 농도상한(%)	비고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염기성 등 색31호(Basic Orange 31)	산화염모제에 0.5 %	그 외 사용기준은 「화장품의 색소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다
염기성 적색51호(Basic Red 51)	산화염모제에 0.5 %	그 외 사용기준은 「화장품의 색소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다
염기성 황색87호(Basic Yellow 87)	산화염모제에 1.0 %	그 외 사용기준은 「화장품의 색소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다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과황산나트륨 과황산암모늄 과황산칼륨	=	염모제(탈염·탈색 포함)에서 산화보조제로서 사용

원 료 명	사용할 때 농도상한(%)	비고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별표 3]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별표 1관련)

2. 일반사항

마.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세포·조직의 채취, 검사, 배양액 제조 등을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균일한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이 제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9. 기록보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이 안전기준과 관련한 모든 기준, 기록 및 성적서에 관한 서류를 받아 완제품의 제조연월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원 료 명	사용할 때 농도상한(%)	비고
인디고페라 (<i>Indigofera tinctoria</i>) 엽가루	비산화염모제에 25%	기타제품에 사용금지
헤마테인	비산화염모제에 0.1%	산화염모제에 사용금지
황산은	비산화염모제에 0.4%	산화 염모제에 사용금지
황산철수화물($FeSO_4 \cdot 7H_2O$)	비산화염모제에 6%	산화 염모제에 사용금지

[별표 3]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별표 1관련)

2. 일반사항

마.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세포·조직의 채취, 검사, 배양액 제조 등을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균일한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이 제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9. 기록보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이 안전기준과 관련한 모든 기준, 기록 및 성적서에 관한 서류를 받아 완제품의 제조연월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